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 체크리스트

2018. 8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 체크리스트

2018. 8

## 일러두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적용 및 활용 편의를 위하여 유용한 안내지침과 관련 규범, 사례예시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이 매뉴얼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구체적 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모범규준의 활용을 위한 실무상의 참고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에서 발췌, 인용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정확성을 발간기관에서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은 기업경영의 환경 변화, 법규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은 향후 모범규준의 개정에 맞춰, 그리고 모범규준 적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계획입니다.

# Contents

## 제1부 감사위원회 매뉴얼

<b>전문</b> .....	<b>3</b>
<b>I. 내부감사기구</b> .....	<b>6</b>
1. 감사위원회 .....	6
2. 내부감사부서 .....	11
<b>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b> .....	<b>13</b>
1. 감사위원회 구성 .....	13
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	18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26
<b>III. 감사위원회 운영</b> .....	<b>34</b>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34
2. 감사위원회 활동 .....	40
3. 감사위원회 평가 .....	50
4. 감사위원 보수 .....	57
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62

<b>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b>	<b>65</b>
1. 직무와 권한	65
2. 재무보고	76
3. 내부신고	83
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85
5. 내부감사부서	93
<b>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b>	<b>104</b>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104
2. 외부감사 실시단계	121
3. 외부감사 종료단계	136
<b>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b>	<b>153</b>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153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160

## 제2부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172
---------------	-----

# 제 1부

---

## 감사위원회 매뉴얼

### 전문

- I. 내부감사기구
-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 III. 감사위원회 운영
-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감사위원회 모범기준

제정 2018.05

### 전문

####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 등 그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통제 강화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모범기준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에 관한 최선관행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과 구성

우리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모범기준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범기준의 내용은 전문과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 여섯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모범기준의 적용

이 모범기준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비상장기업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모범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업규모, 업종 등 기업이 처한 구체적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이 모범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을 포함하여 이 모범기준보다 더 강화되거나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보충적으로 이 모범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I 내부감사기구

## 1 감사위원회

**1.1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 ▶ 안내 지침

-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음
  - 상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되는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을 제시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6 개정)」의 경우에도 ‘대규모 공개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이 기준을 원용함
    -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약 50% 정도가 이미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선택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 바람직함

- 미국 NYSE, NASDAQ 등의 경우에는 모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의 경우 상장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를 두는 것보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바람직함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b>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li> <li>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li> <li>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li> <li>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p> <p>⑤ 제386조제1항·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b>제542조의11(감사위원회)</b>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li> <li>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li> </ol>
--

<p><b>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b></p> <p>II. 이사회</p> <p>2.2 (주식)</p> <p>대규모 공개기업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을 의미한다.</p> <p>III. 감사기구</p> <p>1.1 대규모 공개기업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p>
---

**1.2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을 이사회 차원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한 종류이나 담당하는 업무가 감사를 대신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상법 제415조의2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음
- 따라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유념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만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3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우리나라의 법제의 경우 감사에게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감사를 대체하여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상근성으로 인하여 업무감사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려하여야함
  - 따라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일상적 업무감사 업무를 담당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b>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b>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b>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p>
--

**1.4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이지만 감사를 대체하는 직무의 성격상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에 비하여 고도의 독립성이 필요함
  -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이사회로부터도 일정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함
  
- 일반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있음(상법 제415조의2제6항)
  
-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의 확보 및 유지 관리, 감사직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b></p> <p>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p> <p><b>제415조의2(감사위원회)</b></p> <p>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p>
---

## 2 내부감사부서

**2.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권한도 보유하므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 2016년 7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내부감사기구 산하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감사지원조직, 내부감사 담당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경우 특히 업무감사에 있어 한계가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경우 특히 일상적 업무감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일상 감사업무를 담당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임
    - 내부감사부서는 적절한 인력구성과 조직 전체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 관련 규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규정)**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경우,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회에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내부감사부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내부감사부서의 기본적인 구성과 권한, 의무,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안정 또는 불이익이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 1 감사위원회 구성

**1.1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이므로, 감사위원은 이사이어야 함.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는 감사위원회가 갖는 역할과 책임이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담당하므로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함

▶ 관련 규범

**상법**

**제415조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 이사회

5.2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1.2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으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함
  - 현행 상법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에 한해 최소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격요건을 상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이외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가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감독하는 업무이므로, 회계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함
    - 글로벌 경향을 반영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권고함
  - 따라서 의무설치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에도 회계 및 감사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1.3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구성 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내 지침**

- 상법상 의무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규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2 감사위원 선임과 종임

**2.1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현행 상법상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제415조의2)와 의무설치 감사위원회(제542조의11)는 감사인 선임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의무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음
  - 현재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우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 중에서 다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감사인 선임방식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며, 감사위원회가 주주를 대리하여 기업경영과 회계처리를 감독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임의설치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함
  - 감사위원은 이사회보다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주주에 대한 감사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됨

▶ 관련 규범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2 (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 이외에 다양한 소수주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행 상법상 규정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됨
  -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참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은 더욱 강하게 제한되어 있음
  -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3%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됨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3 (감사위원 추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제도 도입을 모든 상장회사에 권고함
  -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추천을 이사회 또는 주주가 하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기존 경영진 또는 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우려가 존재함
  
- 현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됨
  -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참고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 추천은 독립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함
  -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필수적 설치기구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대표위원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되어 있음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 ④ 제1항의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제2항과 제16조제3항·제4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4 (감사위원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 안내 지침

- 상법은 감사의 임기를 감사위원회에 준용하지 않으나, 감사위원은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 규정이 적용됨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감사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은 경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감사위원이 회사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 임기를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함
  
- 감사위원의 재선임 및 중임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현재 감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와 마찬가지로 중임이 허용됨
  - 그러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감사위원이 장기간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 재선임 및 중임시 독립성 훼손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함

### ▶ 관련 규범

#### 상법

#### 제383조 (원수, 임기)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5 (감사위원회 결원 시 총원)**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상법상 감사위원 결원 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총원방법에 차이가 존재함
-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 구성 요건(3명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함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원에 관한 상법 제386조제1항이 준용되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감사위원은 새로 선임된 감사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감사위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 3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3.1 (독립성)**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은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
  - 상무에 종사하는 이어나 집행임원 또는 최대주주 본인 및 직계 준비속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최대주주와의 관련성이 높은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무에 종사하는 이어나 집행임원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 의무설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인 경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이라 하더라도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상근감사 결격사유(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회사는 경영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규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

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회사는 감사위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b></p> <p>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li> <li>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li> <li>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li> <li>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li> </ol> <p><b>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b></p> <p>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li> <li>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li> </ol>
--

- 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2조의10(상근감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 ②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2 (전문성)**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 회계, 감사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은 회계 관련법규, 재무제표 작성원칙, 감사인의 판단을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함
  - 모든 감사위원이 재무, 회계, 감사 관련 경험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에 있어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financial literacy)가 중요함
  -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위원은 최소한의 재무 및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감사위원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회계 및 재무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효과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해서는 감사위원은 회사가 속한 산업, 법률, 규제, 기술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회계를 포함하여 법률, 산업, 기술 등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동질적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됨
  
-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의 경력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함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
  -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그러나 대규모 상장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관련된 전문성 관련규정이나 자격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11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규정과 유사하게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정해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542조의11(감사위원회)</b>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li> <li>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li> </ol> <p>③ &lt;생략&gt;</p> <p>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2항 각 호 및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li> <li>2.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li> </ol>
--

<p><b>상법 시행령</b></p> <p><b>제37조(감사위원회)</b></p> <p>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li> <li>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li> <li>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li> </ol>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

**미국 SEC의 전문성 규정**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Parts 228, 229, and 249

미국 SEC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아래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재무제표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 ②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③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감사해 본 경험
-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3.3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전문성)**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재무적 감각을 지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장의 역할은 감사위원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기여도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업무를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주주, 채권자, 외부감사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III 감사위원회 운영

###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1 (운영규정)**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임사항에는 감사위원회의 임무, 책임, 구조, 절차 자격이 회사의 특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임사항은 보상위원회, 리스크 관리위원회와 같이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의 책임사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는 역할과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행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함

## ●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구성

제2조 (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해임 및 총원) 감사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는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원한다.

#### 제3장 운영

제5조 (위원회) 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48시간 전에 각 위원회에 문서, 전자문서, 구두,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권한 및 의무

**제8조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업무감사권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 각종 소의 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10.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제9조 (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4. 감사록 작성의 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 의무

## 제5장 기타

**제10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유형)**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 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14조 (감사의 실시)**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 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5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 (문서 등의 열람)**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8조 (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2 (규정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운영규정과 자체평가는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장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1.4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 1.4.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2 감사위원회 활동

**2.1 (감사위원회 활동계획)**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연단위로 정기회의 및 비회의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함
  - 연간 단위의 감사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와 같은 회의활동과 현장방문, 임직원 간담회, 워크숍 같은 비회의활동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감사위원도 감사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에 따라 감사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간 시간투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 안전개발 및 연간계획 수립
  - 감사위원회 안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중요한 안전을 개발하여 논의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회사규정에 따라 내부에서 올라오는 안전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핵심적인 안전도출을 위하여 감사위원은 사전에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외부감사인 등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 안전의 특성에 따라 연간업무, 분기업무, 필요시 하는 업무로 구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은 다음의 6가지 영역에서 도출 가능함
  - 재무제표 보고 감독 영역
  - 외부감사 프로세스 영역
  - 통제환경 관련 프로세스 진단
  - 내부감사 프로세스 평가
  - 리스크 관리
  - 감사위원회 구조

**2.2 (감사록 작성 및 유지)** 감사위원회는 감사수행 후 감사실시 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을 수행한 후 감사실시의 주요 내용과 감사결과가 포함된 감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함
-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에 따르면,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대체하는 기관이므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6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3 (회의)**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개별 감사위원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모든 의제의 안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회사 내 다른 회의일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특히 일부 회사에서 나타나는 이사회 직전에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관행은 지양되어야 함
  
- 또한, 개별 감사위원은 회의 참석 전에 중요한 회의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회의에서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회의참석대상)**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장 그리고 외부감사인 등에게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안내 지침**

- 원칙적으로 감사위원만이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권한을 가지며, 특정회의에 (또는 회의 일부에) 어떤 사람을 참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참석자 선정 및 회의운영 시 고려사항
  - 감사위원회 안건 중에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나 기타 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 내 타 위원회 위원 및 사외이사, 경영진, 업무집행 담당 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 안건이 중요하고 최고경영자, 최고재무경영자, 최고위험경영자 등 회사 내부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러한 외부인의 회의참여가 감사위원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2.5 (회의 빈도 및 소집권자)**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
  - 회의 개최시기는 재무보고 및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영향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회의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일정이 결정된 정기회의와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나 긴급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 감사위원은 서면이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Ⅲ.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 1.5.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인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6 (회의록 작성 및 유지)** 감사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감사위원별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된 후 회의에 참석한 감사위원들이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및 안건별 토의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토의된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참석한 개별 감사위원회별로 제시한 의견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법률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6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회사 정보제공 및 지원)**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회의 전 충분한 정보제공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회의 개최 전에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조직의 장 또는 외부감사인과 사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자료를 회의에 앞서 점검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회의자료가 회의 개최 전 개별감사위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회사 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문도록 관련규정을 내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는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지원조직(또는 간사)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를 지원할 지원조직의 장 또는 간사를 임명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중대한 이해상충 또는 업무집행담당자로서 책임이 있는 자인지를 고려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내부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의 협력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내규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운영예산 수립시 외부전문가 활용과 관련되어 사전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자문의 배경, 내용, 비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 1.7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8 (회의 이외의 활동)** 감사위원회는 회의 이외에도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 이외의 활동도 지원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상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식회의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들은 경영진 없이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이해관계자와의 미팅 등 다양한 회의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현장방문은 감사위원들이 경영진이 준비한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감사위원들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감사인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비공식적인 미팅을 수행할 수 있음

### 3 감사위원회 평가

**3.1 (원칙)**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는 감사위원의 보상 및 재선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업무계획, 활동내용,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감사위원회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감사위원회 수준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실시되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수행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감사위원의 충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2 (평가항목)**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전반을 포괄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의 평가항목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경우 개별감사위원보다는 전체로서 감사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구분
  -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1) 감사위원회 설립, (2) 감사위원회 운영, (3) 감사위원 전문성 개발, (4) 재무보고 감독, (5) 외부감사 감독, (6) 내부감사 감독, (7)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감독 7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됨
  - 그러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상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사례 예시

감사위원회 평가항목

1. 감사위원회 구조와 운영

주요내용	평가점수	만점(5점)	의견
1.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가?			
3. 만약 감사위원의 재무적인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가?			
4. 신임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감사위원에게도 지속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가?			
6.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			
7. 감사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가?			
8. 감사위원회는 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감사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2. 재무보고과정에 대한 감독

주요내용	평가점수	만점(5점)	의견
1.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과정과 조직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핵심가정과 중요한 판단에 대하여 토의하였는가?			
3. 경영진은 전략계획이나 예산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과 재무적인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감사위원회에 설명하였는가?			
4. 감사위원회는 조직의 재무 및 경영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평가하였는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하였는가?			
5. 감사위원회는 비정상적이고 복잡한 거래가 수행된 신규프로젝트 또는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재무/경영위험분야에 대하여 토론하였는가?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구조를 이해하고 감독하고 있는가?			
7.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구조로부터 산출되는 재무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8.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내부통제에 대한 테스트의 성격과 범위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9. 감사위원회는 외부에 공시되는 경영진의 미래경영전망 및 예측이 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10. 감사위원회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문서와 임직원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11.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3. 내부 및 외부감사인과의 효과적인 관계

주요내용	평가점수	만점(5점)	의견
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회사와 독립적으로 선임, 변경 및 해임할 수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회의를 하는가?			
4.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와 범위는 감사위원회가 제기한 이슈와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지 검토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제기한 중요한 문제와 제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6.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업무를 직접 감독하며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7.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연간업무계획과 감사의 범위, 투입인력 및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있는가?			
8.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내부감사보고서에서 제기된 중요한 문제와 제안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9. 만약, 내부감사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를 보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는가?			

4. 법규, 규제 및 내부정책의 준수

주요내용	평가점수	만점(5점)	의견
1. 감사위원회는 조직이 법규, 규제 또는 법률적 요구 사항 그리고 공시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공시되는 재무정보가 조직의 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해 완전하고,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3.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윤리규정, 이해관계 상충규정 등 내부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4. 감사위원회는 이해관계 상충과 관련하여 모든 이슈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는가?			
5. 감사위원회는 이사, 이사회 의장,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공되는 특권적 편의제공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는가?			
6.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자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불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가?			
7. 내부신고자 관련 정책이 적절히 문서화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가?			
8. 내부신고자 관련 절차가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또한 해당 절차가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행될 수 있는가?			
9.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행동이나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할 만큼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출처: Audit Committees: A Self-Assessment Checklist,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Manitoba, Canada의 내용 일부 수정)

**3.3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평가는 설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을 권고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평가는 이사회, 외부평가기관 등이 평가주체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는 활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자체평가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방법의 활용이 가능함
  -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설문조사나, 외부전문가와와의 인터뷰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4 감사위원 보수

**4.1 (원칙)**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은 상법상 회사의 이사로서 주주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필요함
  - 상법상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며, 월급과 상여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됨
  - 그러나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감사위원이 회사에 향후 제공할 미래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기초한 것이라면, 연금 또는 이연된 보상을 받는 것이 허용됨

### ▶ 관련 규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Ⅲ. 감사기구

#### I. 내부감사기구

- 1.9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4.2 (보수산정기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 보수 산정시 감사위원이 업무수행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절적하게 반영하여야 함
- 감사위원인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투입한 시간을 고려하여 다른 이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감사위원 보수 산정시 감사위원이 부담하는 법률적 위험을 고려하여야 함

**4.3 (보수결정권한)**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범위가 결정되며,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지급액을 결정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경영진이 감사위원의 보수를 정하거나 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현행 법규상 주주총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보수총액을 결정하면 되고 위임된 감사위원의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개인별 감사위원 보수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음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정하여야 함
  
-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보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상위원회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이사회내 위원회이므로 보상위원회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보상정책에 따라 감사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4.4 (보수지급유형 및 범위)**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월급, 상여금, 수당, 퇴직금, 주식부여,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편익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유형의 혜택을 포함됨
  - 감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상여금과 퇴직금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감사위원 보수에 포함됨
  - 감사위원에게 회의참여 등 활동별로 지급되는 수당, 감사위원장 등 직책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수당 등도 감사위원 보수에 포함됨
  - 또한 업무추진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 제공, 사무실 제공 등 감사위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편익도 감사위원 보수에 포함됨
  
-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에 대해 보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감사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회사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위원인 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신중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5.1 (원칙)** 감사위원회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이 기존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회사 특유의 지식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역량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감사위원은 신규로 선임된 경우 입문교육을 통해 회사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도 산업특성의 변화, 회사 경영환경의 변화 또는 상법, 자본시장 관련 법규의 변경 등 중요한 경영상의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

### ▶ 관련 규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II. 이사회

#### 7. 이사의 책임

- 7.4 이사는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

**5.2 (교육유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위원 선임 후 제공되어야 하는 입문교육과 감사위원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회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신규 감사위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 현재 주요 경영이슈, 특정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
  - 경영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 감사위원들이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준법준수 및 경영 위험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5.3 (교육내용)** 감사위원의 입문교육은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및 역할과 책임 그리고 회사의 경영환경, 주요이슈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며, 기존 감사위원의 보수교육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선임된 후 다음과 같은 교육이 필요함
  - 감사위원이 신규로 선임되면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입문(orientation)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 규정, 이사회에 전달한 최근 회의록 및 관련자료
    - 최근 연간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 내부고발정책을 포함한 회사정책
    - 리스크 프로파일
    - 재무보고의 내부통제 유효성에 관한 경영진, 감사인 보고서
    - 최근 보도자료, 보안 규제기관 또는 규제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 내부감사규정, 업무계획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최근보고서
    - 주요 회계정책, 소송을 포함한 현재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
    - 재무보고를 논의하기 위한 경영진과의 회의
  -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나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 중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권장됨
    - 중요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브리핑
    - 감사위원회 관련 외부 세미나 참석
    - 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는 컨퍼런스 참석

# Ⅳ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1 직무와 권한

1.1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 ▶ 안내 지침

- 우리나라의 법제의 경우 감사에게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감사 대신하여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의 업무 중 특히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가 업무감사의 주요 내용임
  
-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경우 업무감사에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고려하여야함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경우 특히 일상적 업무감사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일상 감사업무를 담당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 내부감사부서는 적절한 인력구성과 조직 전체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당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함
-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への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임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b>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b>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b>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p>
--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Ⅲ.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1.2 (권한사항)**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고 요청권은 필수적인 권한이며, 이에 대한 기업 내 모든 부서에서의 전적인 협력이 필요함
  - 감사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의 행사절차, 권한범위, 적극적 협력의무, 예외적 거부사유 등을 규정화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하여 상시 운영되는 실질적인 감사업무 담당자인 내부감사부서의 요청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와 각 부서의 협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개선하여야 함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b>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b>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b>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③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p>
---

**1.3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감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도 이사로서의 직을 겸하므로 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위임계약에 의한 민법상의 의무)를 부담함
-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함
  - 이를 구체화한 직무수행 관련 실무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1.4 (공정성)** 감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기반으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별 감사위원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은 지적으로 적정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의 채권자, 은행, 소액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은 스스로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

**1.5 (의무)**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도 이사로서의 직을 겸하므로 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위임계약에 의한 민법상의 의무)를 부담함
- 이사로서 위임관계에 의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충실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예시할 수 있음

▶ **관련 규범**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책임)**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은 이사로서의 직을 겸하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로서 부담하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다만 이사로서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일정한 한도로 제한됨
  - 또한 이사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감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그 책임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관련 규범**

<p><b>상법</b></p> <p><b>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b>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p> <p>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p> <p><b>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b>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p>
---

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 (감사체계의 수립)**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체계는 감사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그 필요성은 절대적임
  -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되는 감사체계에 의한 감사직무의 수행은 모든 감사업무 수행 결과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임
  
- 연간 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15년 Global KPMG ACI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연간 100시간 이상 감사위원회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가 약 57%였으며, 일부 해외기업의 경우 연간 1,000시간 이상을 감사위원회 활동에 소요하는 경우도 있었음
  
- 내부감사부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검증요구에 기반을 둔 감사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
  - 감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어떻게 모든 조직의 부서와 프로세스가 감사될 것인가?
    - 어떻게 감사자원을 사용할 것인가(통산 연일수(man days)로 기록)?
  - 리스크가 특히 높은 영역은 감사순환 초기에 논의되고, 그 후 순환주기 중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년도에 완료된 업무와 내년도에 수행예정인 업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간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은 내부감사 시기와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견해를 가질 경우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함

**1.8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이 장에서 제시된 주요 감사업무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에 맡겨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감사위원회에 맡겨진 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감사활동 관련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총괄 지휘하여야 함
- 만일 상임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장은 이러한 책임사항 중 일부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2 재무보고

**2.1 (재무보고)**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への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상장회사 등 주요 기업의 회계정보는, 물론 기업 내부에서의 이용 목적도 크지만 그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기업외부에도 많이 존재함
-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외부감사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는데 회사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나 재무보고서가 과연 진실한지 알고 싶을 때
  - 내가 투자한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 은행에서 어떤 회사에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대출 후 경영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을 때
  - 정부기관에서 어떤 민간기관에게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등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또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소속 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라면 우리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회계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일정정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음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성격상 일반 거래보다 더 높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위험을 정확히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가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예측치와 재무분석가나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재무정보 및 이익 예측치 등의 정합성을 감독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됨
  
- NYSE 상장규정은 이러한 실적예측정보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의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 ● 사례 예시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특수관계자 거래를 승인하는 프로세스 관련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
  -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는가?
  - 상기의 프로세스가 문서화 되어 있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인가?
  -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 상기의 정보는 누가 제시하여야 하는가?
- 특수관계자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
  - 사업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이러한 근거는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및 목표와 부합되는가?
  - 동 거래가 공시되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동 거래의 결과로 혜택을 입는 내부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 동 거래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동 거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가?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75쪽)

## ● 사례 예시

###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관련 검토사항

- 실적예측정보 등의 검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
  - 이익 예측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경영진이 마지막으로 검토한 것이 언제인가?
  -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기타 회사가 직면한 환경을 고려할 때 그 방식을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 단기 실적 예측치를 달성하려는 압박이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이익 예측치나 미래전망정보와 관련하여 경쟁사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 경영진이 주당순이익 목표 등 미래 추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무엇인가?
  - 이러한 동인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정보는 무엇인가?
  - 주주들로부터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미래 전망정보의 유형에 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할 것을 경영진이 고려하였는가?
  -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가 이익 예측치나 기타 미래정보를 검토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77 쪽에서 발췌)

**2.2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는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추어 특수분야 여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한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함
  
-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회계 및 재무기능의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총괄하는 경영진이 적절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생성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재무기능의 충분한 전문성, 자원 및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 및 재무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회계 및 재무기능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규모를 고려한 후, 회계 및 재무기능의 구조, 문화, 전문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사례 예시

### 회계 및 재무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고려사항

-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항목
  - 회계 및 재무기능에서 활용하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
  - 관리자급 및 비관리자/임시직/계약직 간의 인원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 전체 처리비용 추정치는 얼마인가? (인건비 및 외주비용 포함)
  - 거래 처리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재무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입수할 정보
  - 회계 및 재무 기능 내의 내부통제를 검토하기 위해 입수할 정보
  - 사업계획 수립 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구조, 문화, 전문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항목
  - 회계 및 재무기능의 경영철학과 운영 스타일이 건전한 통제환경과 일관되는가?
  - 회계 및 재무기능의 조직구조는 건전한 통제환경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책임추적성과 통제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도록 회계 및 재무기능의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부여되어 있는가?
  - 회계 및 재무 기능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절한 회계 원칙을 적용하는가?
  - 재무보고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가?
  -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입수하고 또 경영진에 보고하는가?
  - 경영진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78~79 쪽에서 발췌)

### 3 내부신고

**3.1 (내부신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방식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해당 기업 전체의 신뢰성과 명성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사항임
  -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이른바 배신자 낙인찍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러한 기업문화와 인식하에서는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내부신고를 꺾멸시킬 우려가 큼
  - 따라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분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내부신고시스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부서와 협력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내부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
  -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무제표 부정 등 잠재적인 범죄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 사례 예시

### 내부신고시스템의 일반적인 특성

- 외부의 제3자가 내부신고시스템을 운영
-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훈련받은 인력을 상담 담당자로 배치
- 웹사이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른 수단과 함께 24시간 접속 가능한 전화번호 제공
- 다국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담당자
- 최초 신고 이후 재연결 가능 및 익명의 신고기능 구현
- 보복 등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의 보호
- 신고자의 정보 등에 관한 비밀 유지 및 신속한 처리절차
- 모든 임직원, 공급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에게 잘 알려진 신고절차
- 담당자에게 신고를 연결하고, 경영진이 연루된 제보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수단제공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15쪽)

## 4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4.1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는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등의 문서에서 내부통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영업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적용 가능한 법·규제의 준수 등 달성을 위해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주체들이 실행하는 절차
  
- COSO에 따르면 내부통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
  - 통제 환경(Control Environment): 내부통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분위기(문화)를 설정하며, 다른 요소들의 기반이 됨.
    - 직원들의 신의성실성, 윤리적 가치와 경쟁력, 경영진의 철학과 영업 스타일, 경영진의 직원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 배분, 조직 및 발전 방식, 이사회가 제공하는 주의(attention)와 방향을 포함
  -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목표 달성과 관련된 리스크 판별과 분석.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반이 됨
  - 통제 활동(Control Activities): 경영진의 지침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움

- 정보 및 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각자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형식 및 시간 틀을 통해 관련 정보가 인식되고, 획득되고 소통되어야 함
    -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재무와 준법 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해야 함
  - 모니터링: 내부통제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과정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 또한 내부통제 R&R과 관련하여 COSO의 보고서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와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책임을 기술하고 있음
  - (이사회)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원은 객관적이며 능력 있고, 질문을 제기해야 하며, 조직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사회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commit)해야 함
    - 경영진은 거버넌스, 지침과 감독(oversight)을 제공하는 이사회에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 경영진은 내부통제를 무효화하거나 부하들로부터의 소통을 무시하거나 눌러버릴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수 있고,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정직한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강력하고 활동적인 이사회(특히 효과적인 상향 의사소통 채널과 재무, 법적, 그리고 내부 감사 기능이 더해지는 경우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교정하는데 최선임
  - (내부 감사기구) “3rd line of defense”로서 내부감사기구는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감사 행위는 다음과 관련된 조직

감독, 운영, 정보시스템 내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

- 재무 및 운영 정보의 신뢰성과 정직성
-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효율성
- 자산 보호
- 법, 규제, 정책, 절차 및 계약 준수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의 적절성과 실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중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사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관련 시스템의 개선점 모색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리스크 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체계의 신뢰성 확보
IIA; The Audit Committee: Purpose, Process, Professionalism	-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 검토 - 법규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성 검토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검토
France Corporate Governance Code	-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체계의 효과성 모니터링
US NYSE Listing Standards	- 법규준수여부 감독

**4.2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평가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운영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주기는 회사의 제반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반기평가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를 보조하는 중간점검에 준하는 개념으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이 아닌 일부에 관한 심층적인 점검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임
  
- 현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10월 개정된‘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됨
  - 또한 회계처리위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감사)에 조치·시정의무가 부과됨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

**4.4 (리스크관리시스템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재무리스크에 집중해서 이를 관리하는 지침과 정책을 논의하여야 함
  - 이러한 요구사항은 주로 재무리스크와 관련되지만, 재무리스크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공시되는 다른 리스크(전략리스크, 운영리스크, 환경·보건·안전 및 기타 법규준수리스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함
  - NYSE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회사의 재무리스크 평가와 재무리스크 관리정책을 경영진과 논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NYSE Section 303A.07)
  
- 감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미국의 해외부정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금지법(Bribery Act) 등 반부패 관련된 법규를 인지하고 이해하여야 함
  - 이를 바탕으로 법규위반 리스크가 큰 영역이 어디이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은 경영진의 대응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NYSE 상장규정은 윤리규범을 갖출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윤리규범은 그릇된 행동을 방지하고 다음 사항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문서화된 표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개인 또는 업무상 관계에서의 실질적인 또는 외견상의 이해상충을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포함
  - 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하거나 기타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보고서나 문서의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며 이해 가능한 공시
  -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준수
  - 윤리규범에 적시된 담당자에게 위반사항을 즉시 보고
  - 윤리규범 준수에 대한 책임
- NYSE 상장규정은 주요 재무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는 행동규범을 웹사이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SEC의 요구사항에서 더욱 확장된 아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음
  - 이해상충의 처리절차
  -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 금지
  - 회사의 산업과 경쟁되는 사업의 영위금지
  - 비밀정보의 처리절차
  - 회사의 고객, 공급자, 경쟁사 및 직원과 관계에서의 공정한 대우
  - 회사의 자산 보호 및 적절한 사용
  - 내부자 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한 법규의 준수
  -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 행동규범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 ●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의 윤리·준법 프로그램 감독 책임 관련 체크리스트

1. 감사위원회가 일상 업무에서 윤리 및 준법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가?
2. 윤리·준법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책임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나 보고체계를 통해 충분히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3. 최고 윤리 및 준법 담당 임원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4. 윤리·준법과 관련한 보고에 대하여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5. 윤리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임직원들을 적절하고 일관되게 처벌한 증거가 있는가?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13쪽.)

## 5 내부감사부서

**5.1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권 또는 임면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큼
  -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접 내부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것이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장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평가권한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하는 것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일정정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은 100%가 이상적일 것임
    - 그러나 현실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당해 회사의 조직 구성 원칙에 따라 일부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5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조직 체계상 감사위원회에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또한 감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나 관련 내규에 마련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장 또는 직접 업무담당 내부 감사부서 부서원의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부여
  - 특히 그 역할이나 조직의 규모, 예산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완수하도록 하여야 함
  
-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 특히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계를 평가하고 감독업무를 지원하며 그 역할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회사의 재무보고, 운영 및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제시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방향성 제시
  - 내부감사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촉매역할
  -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의 효과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감사위원회가 이들 영역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지원
  - 외부감사인과 업무를 공유 및 조정하고 재무제표나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상호간의 관점을 공유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례 예시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취해야 할 절차

-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고체계 구축
- 내부감사책임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및 내부감사부서에 높은 기대수준을 부여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그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
-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여 존경받고 있으며 고위 경영진의 가시적인 지원을 받는지를 확인
- 연간 내부감사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내부감사부서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
- 경영진과 관련된 이슈 보고 시 책임자를 지원하거나 필요시 처리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08쪽.)

**5.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관리)**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업무 수행의 질은 내부감사부서 조직의 책임자와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신분상의 안정 등에 영향 받음
-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이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신분상의 불이익 우려 없이 감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석)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자격)**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구성이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감사업무의 실질적 효과성 여부는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구성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좌우될 여지가 매우 큼
- 따라서 내부감사부서에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인력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 다만 내부감사부서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하여는 기업의 규모, 영위 업종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규모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함
-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에 대한 자격 및 경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

## ● 사례 예시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질문

- 내부감사 책임자의 선임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하는가?
- 우수한 후보자를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 내부감사 책임자는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내부감사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공인회계사, 공인 내부감사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 사례 예시

### 내부감사 중점 검토 영역 예시

□ 딜로이트가 2017년 내부감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11대 영역

#### 1. 전략계획수립

- 전략계획의 수립은 향후 조직의 성패를 가를 기본 토대를 쌓는 과정이며, 내부감사는 전략의 시나리오 및 기본 가정과 함께 전략이 도출된 과정과 모델의 정합성을 검토함

#### 2. 제3자 관리

- 경영진은 제3자 생태계와 관련한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공급업체, 판매채널, 관계회사, 연구개발 파트너사, 라이선스 제공업체 및 클라우드 또는 기타 정보기술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포함

#### 3. 내부감사 애널리틱스

- 애널리틱스 기법을 통해 다양한 내부감사활동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역동적인 감사계획 수립을 통해 내부감사는 과거 리스크가 아닌 변화하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4. 리스크 통합보증

- 통합보증을 통해 리스크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부감사나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원천에서 제시하는 보증을 취합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

- 리스크 통합보증은 계획수립, 실행 및 보고의 관점에서 더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

#### 5. 사이버리스크

- 지난 수년간 사이버리스크가 일상화된 상태에서 이제 사이버 리스크가 조직의 성과와 정보보안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주기적으로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에 유의

#### 6. 디지털화

- 디지털 기술은 사업이나 이해관계자 및 취약점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디지털 성숙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슈, 리스크, 및 기회요인을 제시하고 있음
- 경쟁사에 비하여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지연되는 조직은 매출이나 이익 및 시장점유율 감소에 직면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7. 리스크관리 문화

- 리스크 관리문화가 조직 내의 전체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양식, 리스크 수용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문화를 중시함
- 리스크 관리문화는 일상적인 운영이나 재무분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제품과 서비스 개발, 시장진입 및 퇴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침

#### 8. 전략 리스크 및 신규 리스크

- 전략리스크는 전략수립의 핵심적인 가정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요소들과 관련됨
- 신규리스크는 조직이 전략적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리스크임

9. 지속가능성 공시

- 규제기관, 기관투자자, 비정부기구, 언론기관 등을 통해 조직과 조직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리스크의 공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내부감사는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운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여야 함

10. 광고대행사 감사

- 광고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광고대행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광고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광고대행사의 투명성과 성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음

11. 새로운 보고방식

-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감사결과를 단순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보고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
- 감사결과 보고서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유용하며, 간결하고, 입체적이며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17.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19~128에서 발췌.)

#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

**1.1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의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 사업개시일 이전
  - 그 외의 회사: 사업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감사(監事)가 선임권한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선임주체는 다음과 같음

〈표〉 외부감사인 선임주체

구분		외부감사인 선임 주체
주식 회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구분		외부감사인 선임 주체
그 밖의 회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선정
유한회사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한회사	회사가 선정

주1) 대형비상장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주2)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주3)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의2):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됨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2017년 10월 31일 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자유수입제 + 3년 지정제)가 도입됨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외부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법 시행일(2018년 11월 1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감사인의 선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가 신설(2018년 11월 1일 시행)되어 해당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금융위원회가 조치 또는 징계를 한 경우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이는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여 회사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품질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여부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회계감사기준과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서 규정하고 있음
-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함

-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 독립성-인증기준”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업공인회계사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8)
  - 정신적 독립성이란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함을 유지하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발휘하도록 함
  - 외관상 독립성이란 안전장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가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성실, 공정 및 전문가적 의구심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함
  -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는 독립성 훼손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상황으로서 재무적 이해관계, 대출과 보증, 인증의뢰인과의 친밀한 사업관계, 가족관계 및 개인적 관계, 인증의뢰인과의 고용관계, 인증의뢰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고위구성원이 인증의뢰인과 장기간의 업무수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인증의뢰인에게 비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10.10)

구분	내용
(1) 이기적 위험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또는 측근 가족(close family)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

구분	내용
(2) 자기검토위협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
(3) 변호위협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
(4) 유착위협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
(5) 압력위협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

-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훼손위협과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취해야 함. 이러한 안전장치의 성격은 개개의 인증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름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10.13)
- 독립성 훼손위협은 심각한 위협과 명백하게 경미한 위협으로 구분됨.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심각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어떤 사항을 명백하게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사소하고 미미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23)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감사용역의 제공이 있는가를 점검하여야 함.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은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최저 감사보수를 제시한 후보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대신 다양한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 단순히 최저 감사보수를 제시한 후보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적은 감사보수를 제시한 후보자는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감사인 입찰 시 외부감사인 후보자가 예상투입시간과 최대투입가능시간을 제시하고 실제 감사시간이 최대투입가능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사보수를 재협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제14조)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

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외부감사법**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외부감사법**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6.30., 2014.11.28., 2014.12.30., 2016.10.25.>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가 모두 동의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1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외이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3(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법 제4조의5에 따른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등

의 의견진술 내용

4. 해당 회사의 등기부 등본

-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31.] [시행일 : 2018.11.1.] 제48조의2

## ● 사례 예시

### 외부감사인 입찰공고 양식

(표지)

OOO회사

XXXX~XXXX 회계연도 감사제안 요청서

20XX. 2. 1

(본문)

#### I. 감사제안요청 개요

##### 1. 감사대상회사

회사명

종속회사 현황(XXXX.XX.XX 현재)

자회사	손자회사	비고
XXX	XXX	

##### 2. 감사대상기간

: XXXX~XXXX 회계연도(X개년)

##### 3. 감사의 범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및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개별 재무제표 감사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분기, 반기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 XXXX

## II. 제안서상 필수 기재사항

###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간략히 기재 요망

### 2. 제안법인의 일반사항

- 회계법인의 연혁, 대표이사 약력, 회계법인의 자회사 등
- 재무현황(자산, 자본, 매출액(전체수익 및 감사부문수익), 당기순이익)
- 회계법인 조직현황 및 인원현황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 및 구체적 내용

### 3. 감사 및 비감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 관련 산업 감사수행 실적 및 감사와 관련된 비감사용역 실적
- 당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비감사용역 제공내역 및 보수

### 4. 회계법인의 감사관련 제도 및 절차

- 회계법인 내부적 Quality control 정책 및 절차
- 회계법인 내부심리 제도 및 절차
- 독립성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유지 절차

### 5. 감사업무의 범위 및 방법론

- K-IFRS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및 절차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및 방법
  - 중요 거래 및 계정에 대한 감사·입증절차 및 방법
  - 회계법인 자체 차별화된 감사기법 적용 Tool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절차
  - 경영진의 자가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방법 등
- 감사팀 운영 계획
  - 감사팀의 우수 인력 유지 및 전문성 향상 지원방안
-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 당사 감사위원회와의 Communication 방법 및 절차 등

#### 6. 감사팀 및 주요 참여 인원

- 감사 전담조직 구성도(IT 감사 포함), 감사팀 운영 계획 및 구성원 역할
- 감사 참여인력구성(회사별, 직급별, 업무별 구분)
- 참여 회계사의 개인별 이력(회계사 경력, 업무경험, 기간 등 구체적 기재)
- 회사별, 연도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등

## ● 사례 예시

### 외부감사인 선임회의록 양식

#### (1) 선임 평가결과

구분	A 회계법인	B회계법인	C 회계법인
감사 및 용역 경력			
회계감사 수행전략			
투입인력의 감사수행능력			
감사품질 관리 적정성			
프레젠테이션 충실도			
감사투입시간 적정성			
합계			

#### (2) 선임 결과에 대한 논의

- 논의내용 기재

**1.2 (외부감사계약의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감사시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중점감사분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계약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제10조)
  - 계약조건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외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등), 중점감사분야 등이 있음
  
- 감사위원회는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외부감사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외부감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 사전협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 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함
- 이때 문서화하는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분·반기 검토 및 기말감사 일정, 감사 투입인원, 실사·외부조회와 관련한 사항, 기타 구체적인 감사절차 등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결과를 외부감사 시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지 여부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 사례 예시

### 감사계획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

- 감사계획 단계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

#### Part 1 감사계약 및 독립성

-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의무
-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계약의 내용
- 독립성

#### Part 2 감사전략

- 감사의 목적
- 감사의 범위 및 시기
- 그룹감사의 개요
- 감사팀 구성

#### Part 3 부정 및 부정위험

- 부정의 정의
- 부정 관련 경영진의 책임 및 지배기구의 활동
- 감사인이 수행하는 절차 및 감사인의 역할

## 2 외부감사 실시단계

**2.1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해야 함. 또한, 외부감사인에게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증거 수집에 도움을 주는 등 외부감사인과 공조를 통해 감사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감사기준서 260)에서는 감사위원회는 “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③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금융감독원 제정)에서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본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특이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논의할 수 있음. 이러한 논의는 경영진의 집행책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사실관계와 주요 이슈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경영진에 추가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참조)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논의하는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 재무보고 담당부서(회계팀, 재무팀 등)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지 여부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인지 여부와 외부감사법 준수 여부

(경영진 관련)

- 경영진이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지 여부
-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경영진이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여부
-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 고발 정책이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인 관련)

- 감사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애로사항)
-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와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인으로서의 확인 내용 및 결과
-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과 그 이유

- 경험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 존재 여부, 재무제표에의 반영 여부, 미반영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중요성 설정기준 및 금액,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 내부통제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 감사위원회는 기업 관련 위험, 특히 재무위험(financial risk)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와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감사위원회와 공유하여야 함.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주요 위험의 존재 여부와 그 위험 수준을 확인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과 공유하고 논의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12년 말에 최신의 국제감사기준(Clarified ISA)을 수용하여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함.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은 위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함.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었음
- 과거의 회계감사기준은 회사가 실행하는 주요 거래관점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위험을 파악하여 감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인 반면에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은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 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위험)을 파악하여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접근방식임
  - 새로운 회계감사기준의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회사가 직면한 위험(risk)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시 됨

- 외부감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함. 감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의 계획단계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각각의 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감사기준서 260**

A7 감사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명칭의 하위그룹)는 많은 국가에서 존재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권한 및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 ● 사례 예시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논의사항

논의사항	평가
<p><b>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b></p> <p>(1) 재무보고 담당부서 구성원의 역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가?</p> <p>(2)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인지하고 외부감사법을 준수하였는가?</p> <p><b>2. 경영진 관련</b></p> <p>(1) 경영진은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가?</p> <p>(2) 경영진은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적용 등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가?</p> <p>(3) 회사는 감사업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가?</p> <p>(4)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고발정책이 적절히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p> <p><b>3. 감사인 관련</b></p> <p>(1) 감사수행 중 직면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p> <p>(2) 외부감사인의 관점에서 회사에서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 이 분야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적절한가? 이 분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적절하게 확인하였는가?</p> <p>(3)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향후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4) 경험있는 감사인원이 참여하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보수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p> <p>(5) 감사수행과정에서 제시한 수정사항이 존재하였는가? 존재하였다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가?</p> <p>(6)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에 대하여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협의한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가?</p> <p>(7) 중요성 설정기준 및 금액은 얼마인가?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었는가?</p> <p>(8) 내부통제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p>	

● 사례 예시

감사위원회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평가
<p><b>1. 경영진 관련</b></p> <p>(1) 경영진이 회사의 중요한 위험을 관리할 계획과 절차를 마련하였는가?</p> <p>(2) 경영진이 회사의 위험수용 한도를 설정하였는가?</p> <p>(3) 회사의 중요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p> <p>(4) 회사의 변화된 위험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과 절차는 적절한가?</p> <p><b>2. 이사회 관련</b></p> <p>(1) 이사회가 회사의 위험을 감독(monitoring)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하게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가?</p> <p>(2)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risk management committee)가 별도로 존재하는가?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p> <p>(3) 이사회가 회사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경영진이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p> <p><b>3. 외부감사인 관련</b></p> <p>(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고유한 회계 및 감사 위험에 대한 접근방법을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는가?</p> <p>(2) 외부감사인이 회사에서 위험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적절한가? 이 분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적절하게 입증절차를 수행하였는가?</p> <p>(3) 회사의 변화된 위험과 환경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이 당초의 감사계획을 적절히 수정하였는가? 이러한 계획수정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논의하였는가?</p>	

**2.2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점검)**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므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6항)
- 해당 회사도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등의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6항)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임직원을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자문·용역·서비스 등 그 명칭 및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작성 및 검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발생시키므로 외부감사인이 수행해서는 안 됨
-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만약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자문회계사(private accountant)의 고용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적절히 제출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기한은 다음과 같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표〉 회사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기한

구분		재무제표 제출기한
재무제표		정기총회 6주일 전 <sup>주1)</sup>
연결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 <sup>주2)</sup>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sup>주3)</sup>

주1)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주2)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주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재무제표를 법정 기간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3항)
-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게도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사위원회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감사 전 재무제표를 주권상장법인은 상장회사협의회에 제출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30.>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삭제 <2014.6.30.>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6.30.>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신설 2014.6.30.>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6.30., 2014.11.28.>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4.6.30.]

### 2.3 (회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외부 정보 수집) 감사위원회

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환율이나 유가 변동, 원재료가격 변동 등)와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환율이나 유가 변동, 원재료가격 변동 등)와 내부정보(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계약사항 변경 등)를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시장 정보와 내부정보에 대한 평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과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외부감사 업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가 회사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 또한, 필요시 해당 내용을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여 외부감사 업무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1) 환율, 유가, 원재료가격 등 회사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시장상황
  - (2) 회사의 사업계획, 주요 계약사항의 변경여부 등 회사 내부정보

(출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2.4 (외부감사과정에 대한 점검)**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실제 감사 수행시 외부감사 수행인력 현황, 감사지원 인력 현황 및 자료제공 등이 당초 감사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현장감사 및 실사 등에 투입된 외부감사 인력 현황 및 주요 감사 활동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함
- 현장감사 수행시 회사가 감사지원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제공가능 비감사용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의6(회계감사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8.>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수립방법과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의견의 구분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감사결과와 보고기준에 관한 사항
  -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7.5.8.>
  -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5.8.>
  -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5.8.>
- [전문개정 2009.12.31.]

### 감사기준서 200

A16 감사업무는 공익성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대상기업과 독립적일 것을 요구한다.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은 독립성을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의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독립성은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하며, 전문가적 의구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감사인의 능력을 높인다.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외부감사인이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warning letter)을 받은 경우에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은 ① 수익인식 관련 내부통제의 미비점 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② 수익인식과 관련된 회계정책, 회계추정, 재무제표 공시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 ③ 감사수행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 ④ 수익인식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배기구의 주의를 환기하고 적절한 경고를 주기 위해 Warning Letter를 감사위원회에 전달
 

(출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 경고사항을 통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달리 알고 있거나 외부감사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가 경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함

### 3 외부감사 종료단계

**3.1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전에 정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
  -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사전에 정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제4항제2호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외부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수행한 증명, 보고, 의견 및 검토에 대한 평가
    -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회사의 검토 의견 및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특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회사의 수정여부 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과 그 선택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평가

(출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discrepancy)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참조)
- 감사수행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이 존재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서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 간에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 수행한 기업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결과가 외부감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외부감사 결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례 예시

감사종료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

(1) 감사수행일정

OO회계법인은 (주)XXX 및 국내 종속회사 5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분	분 · 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	총투입시간
(주)XXX	1분기: 2018.4.19.~22 반기: 2018.7.19.~22 3분기: 2018.10.19.~22	2018.11.19.~22	2018.12.30	2019.1.19.~25	2,500시간
(주)ZZZ	N/A	2018.11.9.~12	2018.12.29	2019.1.10.~15	700시간
...	...	...	...	...	...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감사수행절차

당기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정과목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미수정왜곡표시사항을 제외하고는 보고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Key Risk	금융자산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주)XXX					
(주)ZZZ					
...	...	...	...	...	...

(3) 미수정왜곡표시사항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수정권고 사항 중 경영자가 동의하지 않음에 따른 미수정왜곡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요성 수준 이내에서 경영진진술서에 포함하여 대표이사의 서명을 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IAS 19호 장기종업원급여에 준하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하여야 함에 따라 당기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계리법인의 평가를 받아 별도재무제표에 한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0억원의 미수정왜곡표시사항이 존재합니다.

(4) 그룹감사인으로서 업무수행 절차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인해 (주)XXX 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구분	감사인	주요부문 여부	주요 수행절차
ZZZ	A회계법인	주요부문	- Audit Instruction 발송 -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분석적 검토절차 수행
YYY	B회계법인	소규모부문	- 감사보고서 징구 - 분석적 절차
...	...	...	...

(5) 감사수행 결과 주요 회계이슈

당기 (주)XXX와 국내 종속회사 5개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 독립성

OO회계법인은 2019. 3. 15. 현재까지 (주)XXX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을 2016년 12월 7일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으며, 이후 추가 제공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본 감사인은 외부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였습니다.

(7) 부정·법규위반

당해 감사 중 본 감사인이 발견한 기업의 성과와 수익성을 조정하려는 부정  
은 없습니다.

당해 감사 중 본 감사인이 발견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  
곡표시는 없습니다.

(8) 후속사건

외부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는 2018년 말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에 대하여 보  
고드립니다. 하기 기재된 내역 이외에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  
속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사건	세부내역 및 회사의 회계처리
(주)YYY(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 소송 판결 확정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금융자산을 전액 손상처 리함

[Reference] IAS 10 보고기간 후 사건

-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확인  
되는 경우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 추가로 발생  
한 경우

(9) 서면진술

본 감사인은 경영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을 완수하였고, 감사업무 조건에서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본 감사인  
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  
였다는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일에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3.3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에 대한 검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함
- 이러한 검토과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진행률 적용기업의 경우 총공사원가 추정과 관련한 사항  
(예시) 진행률 산정의 기초자료 변동내역 및 미청구공사, 공사선수금, 공사손실 추당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
  - 중요한 계약체결·변경 등 최근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대규모 자산 양수도, 신규진출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출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 특히,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더 철저히 검증하여야 함

**3.4 (외부감사의견에 대한 평가)**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의견의 변형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차기 사업연도 감사절차 수행시 외부감사인이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감사의견의 변형이란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이 있는 적정의견이나 한정 의견 또는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등을 표명한 경우를 말함

**3.5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연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시 반영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에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포함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 ‘외부감사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외부감사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후의 외부감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례 예시

외부감사인 평가표(External Auditor Assessment Tool)

- 아래 제시하는 외부감사인 평가표는 미국의 Audit Committee Collaboration 이 개발하고, Center for Audit Quality가 발표한 평가표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번역한 것임
  - 2012년 최초로 발표된 평가표에 PCAOB의 감사품질 지표(Audit Quality Indicator, AQI)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고, 미국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2017년 4월에 새롭게 발표된 평가표를 기초로 함
  - 동 평가표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독 및 감사보수 결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네 개의 Part로 나누어짐
- (출처: <http://www.thecaq.org/external-auditor-assessment-tool-reference-us-audit-committees-0>)

응답자: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

<Part 1>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감사업무 수행팀

	항목	평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와 업무수행팀원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을 갖추고 있는가?</li> <li>■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었는가?(회계법인 경력, 해당 기업 감사 경력, 직급)</li> <li>■ 외부감사인은 감사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li>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과 자주 접촉하면서, 외부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일정 및 감사시간의 추세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1) 직급별 투입시간, (2) 전년 및 예산 대비 감사시간 변동, (3) 감사시기별 투입시간 등</li> </ul>	

	항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주요 팀원의 업무량에 대해 논의하였는가?</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과 부정위험을 포함한 주요 위험(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 회계, 감사 등)에 어떻게 대응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논의하였는가?</li>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획의 위험을 적절하게 식별하였는가?</li> <li>■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정위험 가능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였는가?</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그룹감사 등을 위해 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타감사인의 적격성, 경험 및 객관성에 관한 정보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였는가?</li> <li>■ 업무수행이사는 타감사인의 업무를 어떻게 검토하고 감독하는지 설명하였는가?</li> <li>■ 업무수행이사는 타감사인과의 중요한 논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나 주요 팀원의 변경이나 교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가?</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충족하였는가?</li> <li>■ 외부감사인은 상황이나 위험의 변화에 따라 감사전략을 적절히 조정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조정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였는가?</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이사는 회계법인 내부의 전문팀(예를 들어, 회계 및 감사 자문, 품질관리, 공정가치평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공유하였는가?</li> <li>■ 그러한 자문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li> <li>■ 외부감사인은 유의적인 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업무 배정을 하였는가?</li> </ul>	

〈Part 2〉 감사업무의 품질과 투입되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회계법인

	항목	평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기관에 의한 감리 또는 내부심리(또는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감사품질 검토)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해당 감사업무의 선정 여부, 발견사항,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려주었는가?</li> <li>■ 동종 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감독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는가?</li> <li>■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감사위원회에 설명하였는가?</li> <li>■ 업무수행이사는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품질관리 시스템에 관한</li> </ul>	

	항목	평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는가?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법인은 기업의 중요한 회계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산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지방,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였는가?</li> <li>적시에 감사업무를 종료하기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투입하였는가?</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규모, 복잡성 및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감사보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가?</li> <li>감사보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이유(예를 들어, 업무범위의 변경)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는가?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이유에 동의하였는가?</li> </ul>	

〈Part 3〉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항목	평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수행이사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가?</li> <li>업무수행이사는 회계나 감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회계추정과 판단의 합리성을 포함하여 기업 재무보고의 품질에 대해 적절히 논의하였는가?</li> <li>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책이 산업 동향이나 업계 선도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설명하였는가?</li> <li>외부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예를 들어,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을 설명하였는가?</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개 회의(private session)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은 민감한 사안(경영진의 재무보고 절차에 대한 우려사항, 내부고발자 정책, 재무보고 담당부서의 능력)을 전문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하였는가?</li> <li>업무수행이사는 업무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즉시 알렸는가?</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거나 감사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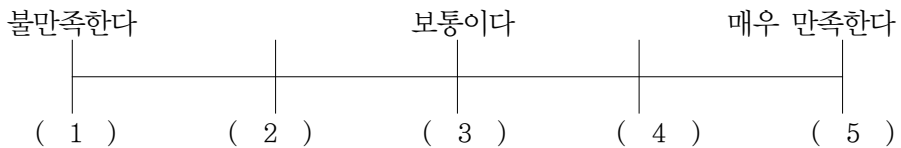
〈Part 4〉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항목	평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은 독립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가?</li> <li>■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간의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슈에 대하여 분명한 의견을 표시하였는가?</li> <li>■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전문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졌는가?</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 업무에 의존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러한 의존의 범위에 동의하였는가?</li> <li>■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에 중요한 의견차이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는가?</li> <li>■ 내부감사의 발견사항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전략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하였는가?</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수행이사는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을 지킬 수 있는 회계법인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li> </ul>	

● 사례 예시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질문서

- 외부감사인과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있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에게 본 양식을 이용하여 외부감사인 평가를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마지막 13번 항목을 제외하고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평가 점수를 기입하도록 함.



응답자: 경영진이나 내부감사팀

	외부감사서비스의 품질	점수
1	외부감사인은 업무에 충실한가? (예를 들어, 기일 준수, 논의 필요시 연락 가능)	
2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이 원활한가? (예를 들어, 산업 관련 사업위험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는지 여부, 이슈를 적절히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하는지 여부, 변화하는 위험에 빠르게 적응하는지 여부)	
3	외부감사인은 기회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예를 들어, 잠재적인 사업위험에 대해 예측하고 이에 대한 직관 및 접근법을 전문적으로 제공)	
4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감사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외부감사인은 원가측면에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회계법인의 자원	점수
5	외부감사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를 실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가?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이슈에 대해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지 여부, 각 감사팀원들은 적절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 매뉴얼

6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사업 위험, 절차, 시스템과 운영에 대해 이해하는지 여부, 관련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지 여부, 회계법인 전문가를 산업 이슈에 활용하는지 여부)	
7	외부감사인은 적시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하여 업무에 투입하는가? (예를 들어, 업무경력에 기반을 둔 적절한 인원구성, 공정가치 평가 및 보험수리적 계산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가 활용, 일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인원 투입)	
8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적절한 수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지 여부, 구두 또는 문서 상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여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여부, 회계기준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9	회계법인이나 그 명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 다른 고객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엄수하면서 회계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연하였는지 여부, 공인회계사 관련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기업이 감리 대상에 선정된 경우 회계 및 감사 이슈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였는지 여부)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가적 의구심		점수
10	외부감사인은 성실성과 객관성을 보여주었는가? (예를 들어, 감사기간 동안 적절하게 질문하고, 적합한 담당자에게 해결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이슈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11	외부감사인은 독립적인가? (예를 들어,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하였는지 여부)	
12	외부감사인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솔직하고 명확하였는가?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소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여부,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조직의 적합한 직급의 담당자와 논의하였는지 여부, 민감한 문제를 잘 다루었는지 여부)	
권고사항		답변
13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 ● 사례 예시

### 외부감사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단계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외부 감사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어 외부감사과정에 대해서 평가함

응답자: 외부감사 담당 회계사

질의내용	답변
XXX년도 감사계획을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보고하였다면 보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바람	
감사품질 관리 및 독립성 유지·평가를 위한 귀 회계법인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된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여부	
투입된 감사인력은 업종 및 회계·감사 이슈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실제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등은 최초 감사계획 보고 시 보고된 내용대로 투입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귀하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압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감사 수행 시 회사로부터 필요한 인력 및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여부	
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담당 파트너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질의내용	답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담당 파트너의 검토·승인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사후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귀 회계법인은 최근 2년 이내 감독당국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사유와 내용은 무엇인지?	
당사의 감사에 참여한 직원 중에서 감독당국으로부터 또는 내부적으로 최근 2년 이내 제재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여부	
당사에 대한 감사기간 중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와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귀하는 감사결과를 적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는지?	
귀하는 감사 수행 중 직면한 문제점이나 우려사항, 경영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쟁점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즉시·직접 보고하였는지 여부	
귀하는 향후 개정될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등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후보고 등 피드백을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	

#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1.1 (감사위원회 권한의 명확화 및 이사회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독기능을 수행함
  
-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terms of reference)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여야 함.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기업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

**1.2 (감사결과외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의 실시절차와 결과를 기록하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내부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구)“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0조제1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과 이 사항이 기술된 방법
  - 외부감사 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재선임에 대한 제안
  -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

**1.3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외부감사법 제22조에서는 부정행위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case 1)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감사인은 ①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②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case 2)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에게 통보
    -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 이와 같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감사인이나 감사위원회 중 누가 발견하든 관계없이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case 3) 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외부감사법 제22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에의 협조를 위해 본 모범규준에서는 이사회에도 보고할 것을 권장함

〈표〉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방법(외부감사법 제22조)

발견한 사실	발견 주체	조치사항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case 1)	감사인은 ①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②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감사위원회가 발견한 경우 (case 2)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에게 통보 → 감사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case 3)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주) →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주)

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참고로 (구)“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0조제2항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case 1)의 경우, 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감사인은 ①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②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이는 미국의 “Section 10A of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를 도입한 것임.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SEC에 보고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10A”에 의하면 감사인이 회사의 부정행위(illegal acts)를 발견하였거나 그 징후를 알게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

- ①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결정
  -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회사의 경영진에게 즉시 알리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
  
- ② 상기 절차 후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
  - 부정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에 대한 평가
  - 경영진이 시의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 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절하거나 감사계약을 철회할 것을 고려

\*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Independent Special Counsel(주로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Independent Special Counsel의 권고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 수정, 내부통제강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수행

- ③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상기 ②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전달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SEC에 보고하고, 감사인에게 SEC 보고문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④ 만약 SEC 보고문서 사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철회하거나, 상기 ②에 따라 회사에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 ⑤ 상기 ④에 의해 감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감사인은 상기 ②에 따라 회사 전달한 검토 결과를 SEC에 직접 제출해야 함

출처: 이창우·정도진·김이배·전규안·이재은·이명곤, 2011,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 관련 규범

### 외부감사법

-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을 때,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적절한 논의를 하여야 함. 그러나 계속해서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적절하게 보고하여야 함

## 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

**2.1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관련 주요내용 공시)**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가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임
- 주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관련 규정, 활동 내역, 교육·연수 내역,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내용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인 경우 회의일시, 회의시간, 회의 내용, 참석자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현장방문 등 회의 이외의 활동도 중요한 감사위원회 활동이므로 활동일시, 활동내역 및 참석자 등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함

〈표〉 주주 등에게 공시하여야 할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

(1)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공시	감사위원회 설치근거 및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외부 공시
(2)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공시	감사위원회 회의 수, 투입시간, 비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외부 공시
(3) 감사위원회의 교육·연수 내역 공시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내역 및 투입시간 외부 공시
(4)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내용 공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및 보상수준과 내용 외부공시
(5)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 공시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타 독립성에 관련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감사위원회 독립성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공시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와 “감사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 사례 예시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 공시

I. 감사위원회 회차 : 회의일(회의시간) 및 안건 통지일

항목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비고
1. 감사위원회 위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가결 여부 및 각 감사위원별 찬성 여부와 반대기권사유)						
나. 제2호 안건 (가결 여부 및 각 감사위원별 찬성 여부와 반대기권사유)						

II. 감사위원회 위원의 연간 누적 활동내역

성명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활동시간	
		1회	참여 여부	2회	참여 여부	3회	참여 여부	4회	참여 여부	목표
○○○										
○○○										
○○○										
소요시간										

III.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 성명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감사위원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감사위원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2. 누적 교육 시간(총 00시간)						

**2.2 (평가결과 보고 및 공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또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통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관련 규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III. 감사기구  
I. 내부감사기구  
1.8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3 (재무제표 관련 주요 내용의 공시)**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가능성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이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여야 함
  - 기업의 계속가능성(going concern,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에 포함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 중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이러한 공시는 간결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여야 함. 연차보고서나 계정과목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정보에 대하여 참조하여야 할 관련 정보는 제공하여야 함
  - 참고로 영국의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재무보고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이슈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기업의 계속가능성(going concern)에 대한 이사회 평가에 관한 내용은 최소한 포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감사위원회는 간결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며, 연차보고서나 계정과목에 포함된 정보를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정보에 대한 참조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출처: Financial Reporting Council, Guidance on Audit Committees 5.3)

**2.4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 시 감사위원 포함)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 시 감사위원 포함)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에는 감사위원회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2.5 (감사위원회의 의견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안내 지침**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므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의 경우에는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상법 제409조의2)
- 일반적인 경우에 ‘감사위원’은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해임되므로(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음
  -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되며,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함(상법 제415조의2)
  - 그러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므로(상법 제542조의12), 감사와 동일하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규에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해임시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해임시 의견진술권 보장 규정

구분		해임권한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		주주총회	보장(상법 제409조의2)
감사위원회 위원	비상장회사	이사회(2/3 이상의 결의, 상법 제415조의2)	보장 안함
	상장회사	주주총회(상법 제542조의12)	명확한 규정 없음

- 또한 감사위원의 해임 이외의 중요한 안전에 관하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규범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2.6 (주주 및 채권자와의 의사소통)**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무구조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안내 지침**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① 감사 1명, ②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④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으로 구성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주주 및 채권자 대표가 포함되는 취지를 살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과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관련 규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6.30., 2014.11.28., 2014.12.30., 2016.10.25.>

1. 감사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나. 해당 회사의 임원인 주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관투자자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여 업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외한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시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제 2 부

---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모범규준 및 매뉴얼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 이는 기업 실무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점검항목을 용이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목적임
  
- 이 체크리스트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됨
  
- 체크리스트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업의 규모, 산업 특성 등 기업이 처한 구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I. 내부감사기구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감사위원회</b></p> <p>(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가?</p> <p>(2)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는가?</p> <p>(3)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는가?</p> <p>(4)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였는가?</p> <p>(5) 위(4)의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사후 처리에 관하여 공시하였는가?</p> <p>(6)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였는가?</p> <p>(7)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였는가?</p> <p><b>2. 내부감사부서</b></p> <p>(1)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였는가?</p> <p>(2)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는가?</p>			

## II.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감사위원회 구성</b></p> <p>(1)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p> <p>(2) 감사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가?</p> <p>(3) 감사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가?</p> <p>(4)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외이사인가?</p> <p>(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내에서 감사위원 간 호선을 통하여 선출되었는가?</p> <p><b>2. 감사위원 선임과 중임</b></p> <p>(1)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가?</p> <p>(2)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가?</p> <p>(3) 독립적인 사외이사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있는가?</p> <p>(4) 감사위원의 임기가 충분히 존중되고 있는가?</p> <p>(5) 감사위원을 연임하거나 중임하는 경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p> <p>(6) 감사위원회가 결원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충원하였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3. 감사위원의 자격조건</b></p> <p>(1) 감사위원이 법규 및 회사에서 명시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p> <p>(2) 감사위원이 재무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p> <p>(3)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 이외에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p> <p>(4)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p> <p>(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p>			

### III. 감사위원회 운영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b></p> <p>(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는가?</p> <p>(2) 경영환경 및 규제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감사위원회 위임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적시에 운영규정에 반영하고 있는가?</p> <p><b>2. 감사위원회 활동</b></p> <p>(1) 감사위원회는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p> <p>(2)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전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시간이 보장되어 있는가?</p> <p>(3) 감사위원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장 그리고 외부감사인인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가?</p> <p>(4) 감사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는가?</p> <p>(5)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p> <p>(6) 감사위원회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는가?</p> <p>(7)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개별 감사위원별로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8)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p> <p>(9)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p> <p>(10)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p> <p>(1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하여 회의 이외에도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는가?</p> <p>(12)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p>			
<p><b>3. 감사위원회 평가</b></p> <p>(1)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p> <p>(2) 감사위원회 평가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업무 등 감사위원회 활동전반을 포괄하고 있는가?</p> <p>(3) 감사위원회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p> <p>(4)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는가?</p>			
<p><b>4. 감사위원 보수</b></p> <p>(1)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에게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2) 감사위원 보수를 산정하는데 감사위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감사위원으로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고 있는가? (3) 감사위원회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는가? (4) 감사위원의 보수를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회 보수산정시 월급, 상여금 등 금전적인 보상이외에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금전적 보상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b>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b>			
(1) 감사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교육기회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2) 회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3) 감사위원이 신규 선임되어 받는 입문교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가? (4) 기존 감사위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가?			

###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직무와 권한</b></p> <p>(1)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는가?</p> <p>(3) 위(2)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였는가?</p> <p>(4) 위(2)의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가?</p> <p>(5)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는가?</p> <p>(6) 감사위원은 감사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는가?</p> <p>(7)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였는가?</p> <p><b>2. 재무보고</b></p> <p>(1)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충실하게 확인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매년 평가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 담당부서가 적절한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년 검토하고 있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3. 내부신고</b></p> <p>(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실제 내부신고가 이뤄진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내부신고와 관련한 불이익 처우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가?</p>			
<p><b>4.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b></p> <p>(1)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는가?</p> <p>(4)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가?</p> <p>(5)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의 운영실태를 반기마다 평가하였는가?</p> <p>(6) 감사위원회는 위(5)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였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5. 내부감사부서</b></p> <p>(1)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가?</p> <p>(2)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조직, 예산이 적절한지 평가하였는가?</p> <p>(4)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는가?</p> <p>(5)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였는가?</p> <p>(6)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였는가?</p> <p>(7)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였는가?</p> <p>(8)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는가?</p> <p>(9)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였는가?</p>			

## V.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외부감사인 선임단계</b></p> <p>(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전에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p> <p>(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p> <p>(5)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였는가?</p> <p><b>2. 외부감사 실시단계</b></p> <p>(1) 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주식 포함)를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였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4) 감사위원회는 회사 관련 외부시장 정보와 내부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외부감사인과 공유하였는가?</p> <p>(5) 감사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는가?</p> <p>(6)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았는가?</p> <p>(7) 위 (6)에서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였는가?</p>			
<p><b>3. 외부감사 종료단계</b></p> <p>(1)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후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는가?</p> <p>(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하였는가?</p> <p>(5)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p> <p>(6)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였는가?</p>			

## VI.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p><b>1. 이사회와의 의사소통</b></p> <p>(1)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권한과 성과를 매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이사회에게 제안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였는가?</p> <p>(4) 위 (3)에서 발견하였다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였는가?</p> <p>(5)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간에 의견불일치가 존재하는가?</p> <p>(6) 위 (5)에서 의견불일치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였는가?</p> <p><b>2. 주주 등과의 의사소통</b></p> <p>(1)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였는가?</p> <p>(2)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와 관련되어 고려할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p> <p>(3)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였는가?</p> <p>(4)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는가?</p> <p>(5)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가?</p>			

점검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사항 없음
(6) 감사위원은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			
(7)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8)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 · 체크리스트**

발행일 2018년 8월

발행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